



## 기 관 명

수신자

(경유)

제 목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

귀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 년 월 일 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됨을 알려 드립니다.

납 세 자	상 호	사업자등록번호
	사업장	
과세유형 전환 사유		
<p>1. 유형전환에 따라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은 ○월 ○일 등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, 현재 사용 중인 사업자등록증은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본인 책임 하에 자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.(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며, 사업자등록증을 폐기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)</p> <p>2.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전환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○○년 ○월 ○일 현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○○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('00. 0. 0~'00. 0. 00.) "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"에 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3. 일반과세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전기·가스·통신요금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있었다면 해당 거래처에 미리 사업자번호 등을 알려주시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</p>		

붙임 :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 1부. 끝.

기 관 장 직인

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◆ 담당자 : ○○세무서 ○○○과 ○○○조사관(전화 : , 전송 : )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

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 )

전송( 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

210mm×297mm[일반용지 7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]